

## 三國史記의 服飾用語 研究(I)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 A Study on Costume Terminologies in Samkuk Saki (三國史記) (I)

Jin 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Ⅲ. 襪 袴
I. 緒 論	Ⅳ. 結 論
Ⅱ. 褸 褌	參 考 文 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to examine costume terminologies in Samkuksaki (三國史記).

*yo ban* (褸褌) and *mal-yo* (襪袴) were examined.

It appeared that *yo* (褸) was the band of woman's skirt and *ban* (褌) was woman's sash worn over skirt. *mal-yo* (襪袴) were the leggings worn by women in Silla period.

#### I. 緒 論

三國史記에는 服飾에 관한 기록이 散見되는데 그것은 資料가 稀貴한 우리나라 古代 服飾研究에 重要한 資料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이 된다.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대한 研究로는 故 金東旭 教授의 研究가 있다. 그러나 故 金 教授의 研究에서 다루지 않은 것, 다루었어도 미진하고 알 수 없었던 것, 또는 그의 추정이나 생각과 見解를 달리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三國史記 色服에 보이는 服飾名中에서 褷褌, 襪袴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紙面의 制約이 있기 때문에 다른 服飾名의 研究는 後續 研究로 미룬다.

## II. 褷 褌

褷字의 音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褷字의 音이 於臂切(廣韻) 伊消切일때 褷字에 대한 해석은 기록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玉篇에 褷, 腰, 褌也.  
詩魏風에 褷之褌之. 傳에 褷褌也.  
晉書五行志에 奏始初, 衣服上偏下豐,  
著衣者皆壓褷.

集韻에 褷, 衣褌也, 或从糸.  
褷字는 褷字의 異體이다.

(康熙字典)

둘째 類篇에 褷字가 一笑切, 音要일 때의 뜻은 衣褌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集韻에도 褷, 衣褌이라고 하였다. 正字通에서는 褷, 衣褌이라 해석하였다.

褌字의 뜻을 보면 廣韻에 褌, 衣褌이라 있고 集韻에 褌, 衣糸曰褌, 或作褌이라 있다.

卽 褌字도 褷字와 같은 衣糸란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褷字와 褌字 두 字를 한 단어로 褷褌이라 쓰기도 하였던 것을 中國史料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예는 아래와 같다.

唐書 車服志에  
平巾綠幘者 尚食局主膳典膳局典  
食大官署食官署供膳奉饌之服也,  
青絲布 袴褶, 羊車小史 五辮髻,  
紫碧腰褌, 青耳厲; 漏生漏童  
總角髻, 皆青絲布 袴褶.

위의 記錄에 의거하면 腰褌은 袴褶의 腰帶인 것이다. 이 腰褌은 腰字와 褌字가 떨어져 使用되지 않고 二字가 이어져서 한 가지 뜻 卽 腰帶란 뜻으로 使用된 것이다. 四聲通解上, 39에서도 腰褌을 腰帶이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新羅 婦女 服飾에 使用되었던 褷褌이란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袴褶에 使用되었던 腰帶는 아니었던 것이 明白하다. 新羅 婦人服飾에서 所謂 男子의 腰帶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三國史記 色服條에 六頭品女에서 平人女에 이르기까지의 婦人의 帶에 대한 禁目이 褷褌과 따로 있다.

또한 三國史記 色服條 四頭品女 服飾에 褷와 褌은 褷與裳同. 褌用越羅라고 있다. 또 平人女

服飾에 褙는 없고 褙만 있는 것을 볼 때 褙와 褙字는 二字를 合하여 한 가지 意味를 가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分明히 알 수 있다.

同書의 平人女 服飾에 褙가 없는 것은 四頭品女 服飾에서 보듯 褙與裳同일 것이다.

그러면 新羅婦人 服飾의 褙는 무엇이고 褙는 무엇인가? 褙와 褙는 왜 男子의 服飾에는 없고 婦人服飾에만 보이는가?

金東旭은 褙는 일종의 치마를 묶는 허리띠인 것 같고 褙는 일종의 옷고름인 것 같다고 추정하였다(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1973, p.41).

新羅婦人服飾에 보이는 褙褙는 唐婦人 服飾에서 由來한 것이다. 唐代에 婦人의 褙褙는 대단히 사치스럽게 裝飾했던 것으로 記錄에 보인다. 白居易의 和夢遊春詩에 裙腰銀線壓이라 했으며 和凝의 楊柳枝詩에도 瑟瑟羅裙金縷腰라는 것이 있다. 裙의 腰部에 金銀線을 넣어 장식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開元 十九年の 服制改定에도 五品以上の 母妻의 腰褙褙緣에 錦繡의 使用을 禁하였다.

韓愈의 詩에도 妻瘦剩腰褙이라 있다.

新羅婦人의 褙褙는 褙와 褙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보았다. 三國史記 色服條 四頭品女의 褙褙에서 褙與裳同. 褙用越羅라고 보이는 이 記錄은 간략하지만 新羅婦人의 褙褙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위의 三國史記 色服條의 記錄에서 新羅婦人의 褙褙는 褙와 褙가 一物이 아니고 異物을 指稱하였다는 것이 明確하여졌다. 또한 위의 「褙與裳同」이라는 記錄은 四頭品女의 褙의 衣次는 興德王 服飾禁令 以前에는 褙와 裳의 衣次는 各기 다른 것을 使用했던 것인데 이 禁令 以後부터는 褙와 裳의 衣次는 同一한 것을 使用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表裳의 衣次는 只用 絁絹已下라고 되어 있고 褙의 衣次는 用越羅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듯 褙의 材料가 裳의 材料보다 더 高級品이다. 越羅는 新羅의 土產品이 아니기 때문이다.

越羅는 蜀錦과 함께 名產品으로 함께 그 이름이 有名하였기 때문에 越羅 蜀錦이라 했다. 卽 越羅蜀錦이란 越國의 羅와 蜀國의 錦을 일컫는 것이다.

裳의 材料보다 褙의 材料로 더 高級織物이 使用되었던 것은 平人女의 裳과 褙의 衣次를 比較해 볼 때에도 發見된다. 卽 表裳은 絹已下를 쓰고 褙는 단지 綾已下를 쓰도록 하였다.

六頭品女나 五頭品女의 表裳과 褙褙의 材料는 興德王服飾禁令 以後에도 禁令이 許用한 限度內에서는 任意로 選擇할 수 있었을 것이라 解析된다.

新羅婦女의 褙褙이 무엇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唐 婦人의 裳의 構造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中國古代의 裳에는 몇 가지가 보이지만 가장 보편적인 형을 보면 치마 윗쪽에는 주름을 잡아서 그것을 치마 허리에 붙혀 꿰맸고 허리 양쪽 끝에는 각각 끈이 하나씩 달려 있다.

中國古代의 치마에 치마허리 卽 치마말기가 있었다는 것은 詩經 衛風의 褙之褙之라는 詩句에서도 證明되고 또한 漢代의 遺物에도 치마에 말기가 보인다.

唐代 婦人의 裳에도 치마 허리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資料로 明白히 알 수 있다.

唐代 婦人의 裳에 허리가 있었다는 것은 문헌이나 繪畫 또는 其他 藝術品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것들을 관찰하여 보면 裳에 치마말기 허리 部位를 따로 대었지만 이 둘을 같은 材料로 만들고 매는 끈만 다른 色이나 재료를 사용한 것이 있고, 裳의 몸판과 치마말기, 허리끈이 쏘

部 각각인 색과 材料를 사용한 것도 있으며, 또는 치마의 말기와 허리끈은 같은 색과 衣次이고 裳의 색과 衣次, 紋樣等만 다른 것 또는 裳, 치마말기, 허리끈이 全部 同一한 것 등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唐代婦人의 치마와 치마 말기, 치마끈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예는 張蓋의 搗練圖이다. 가장 왼쪽 부인은 무늬있는 靑色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말기는 치마 몸판과 同一한 감이고 치마 말기위에 둘러맨 끈만 엷은 황색계통이다. 중간 두번째 부인은 단색 진한 황색 계통의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 말기는 白色계통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것이고 치마 말기 위에 맨 가는 끈은 純白의 단색이다. 제일 오른쪽 부인은 녹색 계통의 큰 무늬가 있는 치마를 입고 남색끈을 매었는데 치마 말기는 치마와 같은 감으로 보인다. (中華文物集刊 服飾下, pp.226-227)

왼손으로 오른쪽 옷소매를 만지고 있는 女人은 무늬있는 靑色 치마에 赤色 가는 허리끈을 매었는데 앞으로 한 가닥만 늘어 뜨렸고 치마말기는 치마 몸판과 同一色이고 同一한 감이다. 바로 그 옆 부인은 회색치마를 입고 허리끈은 남색 가는 끈을 매었다.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女妝飾, 1988, p.75) 周昉의 揮扇士女圖에 보이는 여인은 붉은치마를 입고 끈은 치마와 다른 색을 매었고 치마 말기는 치마와 같은 감이다.

擘扇士女圖의 여인은 흰색계통의 치마에 붉은색 허리띠를 매었는데 치마와 말기는 같은 색이다.

또한 西安王家墳村 出土 唐 三彩女俑에서도 唐 婦人의 치마말기를 볼 수 있다. 이 女俑의 치마 말기도 치마 몸판과 다른 색으로서 치마 몸판은 녹색에 꽃무늬가 있는데 말기는 갈색에 同色무늬가 있는 것이다. 치마 끈은 치마말기 색과 同一한 갈색으로 앞에서 양쪽 고리를 지어 매었다. (中華服飾五千年 文物集刊 服飾篇上, p.208)

이러한 그림들 중에서 張萱의 그림과 그의 다른 그림이나 예술품 자료를 모습에서 볼 때 唐 婦人의 치마허리끈은 그 입은 모습에서 볼 때 치마 말기에 붙인 끈이 아니고 따로 치마 말기 위에 맨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다. 만약 치마 말기에 붙어있는 끈이었다면 끈을 맨 모습이 그림에서 보듯 그렇게 깨끗이 매어질 수 없다. 분명히 따로 끈을 맨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新羅 婦人의 裳의 形式도 치마몸판부위, 허리부위 (즉 말기)가 따로 있었고 치마 허리 부위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으며(또는 주름이 없는 것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 주름 잡힌 부위에 치마허리 즉 치마 말기를 붙이고 치마 말기의 양쪽 끝에는 끈이 달려 있어서 한복의 치마 모양과 별 차이가 없는 모양이었을 것이라 믿어진다.

三國史記 服飾 禁制에 의거하면 四頭品女와 平人女의 褙의 材料는 褙의 材料보다 더 좋은 것을 使用하도록 한 것이 발견된다. 이로 볼 때 興德王代의 新羅 婦人도 唐代의 婦人式으로 裳을 襦 위에 입기도 하였을 것이라 해석된다. 新羅婦人이 襦 속에 裳을 입었다면 六頭品女의 褙에 屬繡나 五頭品女의 褙에 屬繡錦羅와 같이 비싼 織物을 使用하지 않았을 것이다.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는 新羅婦人의 褙는 褙와 褙가 따로 있었고 褙外에 婦人의 帶가 따로 있으며 褙는 婦人의 服飾 項目에만 있다. 이는 新羅 婦人 服飾에 褙만 보이는 것은 褙는 婦人 服飾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 禁制의 婦人服에 보이는 褙는 一物이 아니고 褙와 褙로 二物이다.

褙는 치마 말기 卽 치마 허리이다. 褙는 衣糸란 意味이지만 치마 허리 끈이다. 치마, 허리끈

은 치마 말기 양쪽끝에 붙어있는 치마 허리 끈과 따로 만들어 치마 말기 위에 매는 허리끈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치마를襦위에 입었을 때의 치마 허리끈은 치마 허리에 붙인 것보다는 따로 매는 독립된 허리끈이 더 보기 좋게 매어질 수 있고 또 唐代의 그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도 독립된 치마 허리끈(또는 띠)이 많았으므로 新羅婦人의 褳도 독립된 치마 허리끈(띠)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褳의 양쪽 끝에 끈은 역시 있어야 한다.

新羅 興德王代의 新羅婦人은 唐風을 좇아서 褳를 襦위에 입었을 것이므로 褳은 衣糸이긴 해도 襦에 붙어있는 옷고름은 아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 Ⅲ. 褳 物

三國史記 色服條에 眞骨女를 除外한 모든 女人 卽 六頭品女에서부터 平人女의 服飾에 褳物란 기록이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에 褳에 대한 禁制는 男女共通으로 있는데 反하여 褳物에 대한 禁令을 오직 婦人에게만 있고 男子에게는 없다.

卽 三國史記 色服條의 褳物에 대한 禁令을 보면 다음과 같다.

六頭品女.	褳物 麗羅總羅.
五頭品女.	褳物 麗羅錦羅總羅.
四頭品女.	褳物 只用小文綾純綿紬布.
平人女.	褳物 用無文.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褳에 대한 기록이 男女共通에 해당되는데 왜 褳物에 대한 기록은 男子의 服飾에는 보이지 않고 女子 服飾에만 보이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褳物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그 뜻을 찾아보면 이 物字는 物, 絢字로도 쓰며 그 意味도 同一하다.

「廣韻」에 物, 褳物, 「集韻」에 物, 褳頭, 「集韻」 物褳上也라 있으므로 褳物란 褳筒 卽 버선목이란 뜻이다. 物字 하나만으로도 버선목이란 뜻이다.

이와 같이 褳物란 말은 버선목이란 뜻이 있으므로 三國史記 色服條의 褳物란 말은 번역 본에도 버선목이라고 되어 있고 근래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도 褳物를 버선목이라고 이해하였다. (柳喜卿, 한국복식사, 1980, p.94) 그러나 金東旭은 褳物를 버선목 끈으로 보았다.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 研究 1973. p.44.) 그리하여 新羅 時代의 褳의 구성은 褳底와 褳頭이 각각 있었고 이 두 部位에는 각각 다른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두 部位를 이어 붙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新羅 三國史記 色服條에 보이는 褳物가 褳頭을 意味하는 것이라면 男子 褳物의 材料에 規制가 없는 이유에 대한 가능한 해답은 男子의 褳頭에 使用되었던 材料는 婦人의 褳頭 材料처럼 사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男子의 褳는 婦人의 褳에 褳頭을 따로 붙인 것과는 달리 버선의 발 部位와 버선목은 따로 잇지 않고 한가지 材料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假定일 것이다.

위의 가정은 襪物의 意味를 襪頭 卽 버선목으로 解釋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三國史記 色服條에 眞骨女의 服飾에만 襪物란 項目이 없을 뿐이다. 眞骨女의 服飾에 襪物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에 대한 記錄이 누락되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眞骨女만은 襪物의 材料를 禁令以前같이 임의로 使用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앞의 예에서도 이미 보아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의 婦人服飾에 있는 襪物란 말은 新羅의 독특한 服飾品名이었는지 잠깐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興德王服飾禁制에는 相當한 數의 中國服飾名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또한 襪物란 新羅 婦人의 服飾이 新羅人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中國服飾名과 같이 中國에서 전래된 것이라면 古代 中國人이 使用하였던 服飾用語 부터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바람직하고 바른 연구가 되기 어렵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新羅婦人 服飾에 들어있는 襪物란 新羅服飾用語에 대하여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新羅婦人의 服飾에만 襪物에 대한 禁制가 보이는 理由에 대한 回答은 襪物란 말의 정확하고 적절한 뜻을 파악할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버선목」이라고 해석했던 뜻 외에 다른 뜻이 있는지 찾아 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이미 襪物란 말은 物, 物, 鞞 등으로 通한다는 것과 또한 襪物란 말은 新羅婦人 服飾에만 있었던 말이 아니었고 中國에서 由來된 말이었다고 提及하였다.

그러면 襪物와 관련이 있는 中國의 기록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中華古今注에 至隋煬帝宮人, 織成五色立鳳朱錦襪鞞.

李肇의 唐國史補에

馬嵬嬸得 貴妃錦物襪一隻. 每遇過客 一翫百錢, 獲錢無數

위와 같은 內容의 기록은 太眞傳에

女好死之日 馬嵬村嬸得錦物襪一隻, 每遇客 求一翫得百錢.

馮贄의 記事珠에도

楊貴妃 死之日, 馬嵬嬸得 錦鞞襪一隻.

通俗編 服飾 踏物條에 「張祐柘枝舞詩」却踏聲聲錦物催.

「李肇國史補」

馬嵬店嬸 收得楊妃錦物一隻.

「楊維禎詩」天寶年間窄物語.

「東京夢華錄」有鞞物巷.

宋史 輿服志의 天子襪에 대한 기사에도 羅衣繒裏施物著綦以繫之라 있어 宋代의 襪物에는 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에서 襪物는 襪物, 物襪, 鞞襪, 物, 物, 鞞物, 物 등으로 나타난다.

襪物는 또한 隋代에 이미 宮人들에게 使用되었고 襪物의 재료는 織成五色立鳳朱錦이 使用되었던 것이 발견된다.

唐代에도 襪物가 使用되었는데 楊貴妃가 死亡한 날에 錦物를 신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天寶年間の 襪物는 筒이 좁은 것이 流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宋代에 天子도 襪物를 使用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 예시된 바에 의거하면 襪物는 버선에 붙어 있는 襪의 한 部位인 그것은 버선목이 아니고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服飾 品目名이라는 것이 明白하다.

襪物은 여러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時代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기도 했다.

「致虛閣雜俎」에 太眞著鴛鴦並頭錦襪，上戲曰 貴妃 襪上乃眞鴛鴦蓮花也」太眞問 何得此稱，上曰 不然其間安得 有此白藕爾 貴妃由此名襪爲藕覆。注云 襪，今俗呼膝襪。「方氏叢鈔手抄本」中一有關膝襪的形制極多。

唐代에 襪物은 褲襪，藕覆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었으며，襪物은 褲襪은 膝襪라고도 했다. 宋代에도 이것은 膝襪라고도 불렀다. 宋代에는 婦人뿐만 아니라 男子도 或 膝褲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膝褲를 俗稱 踏物라고도 했다(通俗編 服飾 踏物條，俗稱 膝褲曰 踏物，亦本古也.)

襪物은 鞮袴，鞮袴，袴襪，褲脚，襪頭袴，半襪이라고도 불렀다. 膝襪은 契丹語로 鈎敷，鈎整，帛整이라고도 불렀다.

膝襪은 一種의 套褲인데 宋元明代를 걸쳐서 婦女子들이 입었고 清代의 男女가 套褲를 사용하였지만 婦女가 套褲를 입기 좋아 하였다.

「留青日札」唐世，婦人皆著襪，今婦人纏足，其上亦有半襪罩之，謂之膝袴라고 있어 纏足を 했던 中國婦人들이 半襪을 使用했다 하고 이 半襪을 膝袴라고 했다고 하나 襪物은 이미 漢代부터 사용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襪이 襪下(即 발부위)와 襪上(郎 버선 목)이 있는 것에 反하여 襪物은 襪下(발 부위)가 없고 襪上 部位 즉 脛部 部位만 있는 一種의 套袴，또는 脚絆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套袴는 古代의 袴에 속하는 形制이다. 그러나 時代와 流行에 따라서 넓고 좁은 것，크고 작은 것，또는 장식 등에 차이가 있어 그 形制가 極多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다.

漢代의 襪物은 그 筒이 대단히 넓은 것이어서 그것을 입었을 때의 모양을 상상하여 보면 넓은 筒의 바지를 입고 발목쪽은 좁게 조인 바지 같다. 그러나 宋代의 膝袴는 그 착용한 모양을 보면 筒이 좁아서 종아리에 맞게 끼워입은 종아리 싸개 같다.

新羅 興德王 服制禁制의 婦人服飾條에 기록되어 있는 襪物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규명되었다. 襪物은 하나의 독립된 服飾品目으로서 그 역사도 유구하고 또한 그것은 시대와 유행에 따라 여러가지 形制가 있었던 것도 밝혀졌다. 新羅의 襪物가 어떤 形制였을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唐代의 天寶年間에 窄袴가 流行하였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것은 唐代의 窄襪物에 가까운 형태와 形制의 것이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襪物과 襪은 異物이라는 것을 더 分明히 알기 위하여 興德王 服制禁制의 襪에 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色服條에 襪에 대한 記錄은 眞骨大 等の 男子에서 부터 六頭品 男子，五頭品 男子의 것에 보이고 四頭品 男子와 平人男子의 襪에 대한 規制는 보이지 않는다. 四頭品과 平人男子 服飾에 襪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그들이 襪을 使用하지 않았다는 意味는 아니고 그것은 기록의 누락이었을 것이다. 襪에 대한 禁制는 女子의 服飾에서는 眞骨女에서부터 平人女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보이므로 襪은 귀천을 불문하고 男女가 공통적으로 使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襪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이었었기 때문에 男子와 귀천의 구별없이 그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襪은 鞮，鞮，袜字로도 쓰는데 足衣 即 버선이다. 襪이 필수품이었으므로 男女 귀천없이 사

용되었던 품목이었지만 男女貴賤과 階級品階에 따라서 襪의 材料에 差異를 둠으로써 階級과 社會적 身分의 區別을 한 것이 三國史記의 興德王 服飾禁制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男子

眞骨大等. 襪任用綾已下.

六頭品. 襪只用純綿紬布.

五頭品. 襪只用 綿紬.

女子

眞骨女. 襪 禁麗縹羅

六頭品女. 襪 禁麗錦錦羅縹羅野草羅.

五頭品女. 襪 禁麗錦錦羅縹羅野草羅.

四頭品女. 襪只用小文綾已下.

平人女. 襪用純綿紬已下.

위에서 男女 襪의 禁制를 보면 男子와 女子의 襪의 材料에 대한 規制는 女子 襪에 많은 種類의 織物名이 있고 男子 襪의 材料는 女子것에 比하면 훨씬 단조롭다.

新羅時代 襪의 形態는 實物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中國東漢時代의 襪을 참고로 보면 오늘날의 소위 양말이라는 것과 그 形態가 별로 다르지 않은데 新羅時代의 襪도 形態面에 있어서는 中國古代의 襪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959년 中國 新疆省 民豐縣 北大沙漠 一號墓에서 東漢時代의 錦襪 두 켤레가 出土되었다. 이 中 소위 「延年益壽大宜子孫」 錦襪이라고 알려진 것은 男子所用이었다고 하는데 그 형태가 발바닥의 윤곽이 약간 있는듯한 것으로서 버선목이 있고 버선목 끝에는 가는 線 장식이 들려 있다.

또 한 켤레는 소위 菱紋「陽」字 錦襪이라 알려진 것인데 이 襪은 女子의 것이었다고 한다. 이 襪은 앞의 男子 襪에 比하여 襪의 形態가 더 밋밋하여 발 모양에 덜 맞는 모양이며 버선목 에는 따로 넓은 黃色絹(원래 白色이었는데 黃色으로 變換한 것)을 대어서 촘촘하게 꿰매어 붙 졌다.

#### IV. 結 論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褸褌은 腰帶란 意味가 있다. 그래서 褸褌이란 말은 腰帶란 意味로도 使用된다.

褸褌은 衣褌 即 衣糸의 意味가 있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新羅 婦人 服飾條에 나타나는 褸褌이란 말은 한개의 단어가 아니다.

褸와 褌은 각각 別個의 말이다.

褸는 치마 허리허리 즉 치마 말기로 해석된다. 褌은 衣糸이긴 하지만 치마 위에 매는 허리 띠로 해석된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婦人 服飾에 보이는 襪袴는 襪선목이 아니다. 襪袴는 唐代 婦人들이 사용하였던 服飾名이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婦人 服飾條에만 襪袴와 襪袴에 대한 規制가 있는데 襪袴와 襪袴는 婦人所用의 服飾品目이었기 때문에 해석된다.

## 參考文獻

1. 강길운,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서울, 새문사, 1990.
2. 강길운, "길약어와 한국어의 비교연구(Ⅱ)", 수원대 논문집, 1984.
3. 강희자전.
4. 김방한, 어원론, 민음사, 1990.
5.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서울, 민음사, 1983.
6. 김동욱, 이조전기복식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1963.
7. 김동욱, 증보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8. 김부식, 삼국사기.
9. 남광우, 고어사전.
10. 노길태 언해.
11. 동문유해.
12. 몽어유해.
13. 문선규, 조선관역어 연구, 경인문화사, 1972.
14. 박통사 언해.
15. 방학근,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1978.
16.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상·하, 동광출판사.
17. 방언집석.
18. 신기철, 신용철, 국어대사전 상·하.
19. 역어유해.
20. 유창순, 이조어사전.
21.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22. 왜어유해.
23. 이여성, 조선복식고, 서울, 백양당, 1947.
24. 이용범, "삼국사기에 보이는 이슬람상인의 무역품", 이홍직 박사회갑기념 한국학논총.
25. 衫本正年, 東洋服裝史 論攷,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 59년.
26.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上, 下.
27. 勝田豊八, 朝鮮語方言の研究 上, 下.
28. 勝田豊八, 東西文渉史.
29. Boucher, Francis, History of 2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ams; Publishers, n.d.
30. Brown, Franci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Univ.

Press, 1978.

31. Kalgren,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32. Kim, Jin-Goo, Korean Costume: An Historical Analysi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Univ. of Wisconsin, Madison, Wis., 1977.
33. Picken, Mary Bookers,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 & Wagnalls, 1973.
34. Ross, Heather Colyer, The Art of Arabian Costume, Switzerland, 1981.
35. Wignate, Isabel B. ed. Fairchild's Dictionary of Textile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1967.
36. William, S. W. wells,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37. Yarwood, Doreen,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1983.